##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630

발의연월일: 2021. 4. 21.

발 의 자:김원이·최혜영·허종식

박성준 • 박홍근 • 최종윤

박완주・이동주・이수진비

이정문 • 이해식 • 서영석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 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 으로 위촉하도록 하고,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은 대통령령에 위임함.

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의 청년 위촉 최소 비율을 1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 에 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은 청년을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의 수립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

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2항 전단 중 "일정 비율"을 "10분의 3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등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	제15조(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
참여 확대) ① (생 략)	참여 확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	②
시·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	
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	
촉직 위원의 <u>일정 비율</u> 이상을	<u>10분의 3</u>
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 이	
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	
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	
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	
다.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